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00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4011호)	박수영의원	2024-09-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제안설명·검토보 고·소위원회부, 제1차~제6차 조세소위 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제8차 조세소위 원회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5115호)	송언석의원	2024-10-31	소위 직접회부 (2024.11.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제8차 조세소위 원회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6254호)	안도결의원	2026-01-2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 원회 상정·제안설명·검 토보고·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심 사·의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 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 제6항).

#### 4.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  
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  
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  
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  
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전용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전용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거승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⑥ (생략)

<신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  
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이용  
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  
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  
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  
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  
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  
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  
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

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  
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  
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  
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  
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  
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  
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  
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명당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 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  
회사등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  
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  
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  
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  
이 명시된 국민성장집합투자증  
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  
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전용저축에 가입한 가입자  
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  
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  
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

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전용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

관은 이를 전용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  
-----  
-----  
-----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  
-----  
-----  
-----





